오픈스페이스 사용 규칙

제 1 조(목적)

본 규칙은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(이하 본회)에서 KAIST 학생 문화 발전과 장영신학생회관(이하 '신학관'이라 한다)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학관 내 오픈스페이스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공간 목적)

오픈스페이스는 전시, 공연 등 기타 열린 공간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.

제 3 조(공간 구성)

오픈스페이스는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된다.

- 1. 옥상
- 2. 3층 로비
- 3. 커뮤니티 마당
- 4. 전시계단
- 5. 2층 로비
- 6. 미디어스페이스
- 7. 1층 로비
- 8. 모임터

제 4 조(대상)

- ① 오픈스페이스의 예약 사용 대상은 본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개인 혹은 1인 이상의 단체 으로 한다.
- ② 이 외의 단체일 경우, 본회 기획팀회의 혹은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거쳐 예약 사용을 승인한다.

제 5 조(사용)

- ① 사용은 예약 사용과 상시 사용으로 구분한다.
- ② 오픈스페이스는 24시간 상시 사용할 수 있으나, 행사를 진행할 경우 무조건 예약 사용해야 한다. 예약을 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할 경우, 이를 미예약 사용이라 하며 공간위원은 학우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 중단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. 제재부과 후, 신학관 사용 규칙을 안내한다.
- ③ 예약 사용은 상시 예약을 한 후 사용하는 것이다.
- ④ 상시 예약은 본 회의 예약 시스템(scspace.kaist.ac.kr)을 통해 할 수 있다.
- ⑤ 상시 예약은 사용일의 45일 전 23시 59분 부터 5일 전 23시 59분까지 받으며, 최대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. 이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예약을 하고자 할 시, 본회기획팀회의 혹은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거쳐 예외 예약으로 처리한다.

- ⑥ 오픈스페이스는 행사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본회의 예약 승인 후 사용이가능하다.
- ⑦ 모든 예약은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⑧ 학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오픈스페이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.
- ⑨ 예약자는 예약에 대한 본 회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.
- ⑩ 예약자는 본 회에서 구비한 다양한 전시 도구들을 물품 대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 대여하여 전시에 활용 할 수 있다.
- ① 소음이 있는 예약의 경우, 소음 양해서를 작성하여 예약 전 날까지 사무실 상근시간에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소음이 있는 예약임에도 소음 양해서를 예약 전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다.
- ② 사전 신청자를 받는 닫힌 행사일 경우 예약을 받지 않는다.
- ③ 행사 진행 중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.
- 4 옥상의 경우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옥상에서의 음주를 금한다.
 - 2. 옥상에서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⑤ 3층 로비, 2층 로비, 1층 로비의 경우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로비는 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예약 시 사람들이 다닐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.
 - 2. 예약 시 사람들이 단체실에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한다.
- 16커뮤니티마당의 경우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커뮤니티마당은 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예약 시 사람들이 다닐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.
- ① 전시계단의 경우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전시 계단은 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예약 시 사람들이 다닐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.
 - 1. 전시에 필요한 경우, 본 회 및 해당 게시물 부착 단체와 협의한 후 게시물을 철거 할 수 있다.
 - 2. 계단이므로 안전사고를 일으킬 만한 예약은 승인하지 않는다.
- (18) 미디어스페이스의 경우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미디어스페이스는 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예약 시 사람들이 다닐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.
 - 2. 미디어스페이스의 TV를 예약에 사용할 경우, 본 회와 협의가 필요하다.
 - 3. 미디어스페이스의 CD 플레이어의 경우, 아래의 목을 따른다.
- i.CD 플레이어는 상시 사용이 가능하다.
- ii.CD 플레이어는 예약이 불가능하고, 미디어 스페이스를 예약한 경우 타 학우의 CD 플레이어의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.
 - (19) 모임터와 미디어스페이스의 책상의 경우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간단한 음료 및 스낵을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.
 - 2. 60분 이상 자리를 비울 시 본 회에 의해 철거될 수 있다.

제 6 조(보증금)

- ① 보증금은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음식, 주류 미 반입: 10 만원
 - 2. 음식, 주류 반입: 50 만원
- ② 보증금은 행사 2 일 전 23 시 59 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보증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.
- ③ 보증금은 아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한다.
 - 1. 시설물 파손
 - 2. 뒷정리 미흡
- ④ 보증금은 원상복구를 위한 금액만큼 차감되고, 해당 보증금보다 큰 액수가 소모된 경우 책임자들간의 사후 논의를 통해 차감 규모를 결정한다.
- ⑤ 보증금은 예약종료 후 사후 점검을 통해 점검 후 행사 종료일으로부터 7일 내에 반환된다.

제 7 조(페널티 제도)

- ① 아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부과한다.
 - 1. 통행로 미확보
 - 2. 사용 시간 및 정리 시간 미준수 (예약시간 종료 직후 1회 부과 후 그 이후 24 시간 기준으로 주의 1회씩 부과)
 - 3. 전시 중 해당공간 무단 게시물 게시
 - 4. 협의 사항 미준수
 - 5. 정해진 예약 기간 내 미예약 후 예외 예약 승인으로 인한 행사 진행
- ② 아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를 부과한다.
 - 1. 미예약 사용
 - 2. 소음양해서 미제출, 보증금 미입금 등 예약 취소자의 예약 사용
- ③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, 주의를 부과하고 장영신학생회관 공간사용규칙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.
- ④ 주의 2회가 누적된 경우, 경고 1회로 대체가 된다.
- ⑤ 경고 1회가 누적된 경우, 마지막 경고일로부터 60일 동안 오픈스페이스의 예약이불가능하다.
- ⑥ 경고 2회가 누적된 경우, 마지막 경고일로부터 365일 동안 오픈스페이스의 예약이불가능하다.
- ⑦ 부과된 경고 및 주의는 부과일으로부터 365일 후 소멸된다.

부칙

개정된 본 세칙의 시행은 2019년 3월 27일로 한다.